漁業經營合理化의 原理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Principle of Rationalization in Fisheries Management

孔　龍　植

Ryong-Sik Khong

目　次

一. 序　論
二. 經營合理化의 原理와 漁業經營
三. 漁業經營合理化와 費用配分
四. 結　論
Summary

一. 序　論

漁業經營에 있어 「經營合理化」의 問題가 200海里時代와 더불어 새롭게 經營內部에 깊숙히 파고 들어 經營體가 解決해야 할 最重要課題로 우리가 認識하기에 이른 것은 漁業經營方式에 있어서 하나의 時代가 終焉하고 새로운 漁業經營方式을 模索해야 할 時期의 到來를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지금까지의 經營方式이 環境에 充分히 適應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方式에 대해 그 價値를 새로히 總括하여 보고자 할 때 새로운 環境適應策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經營合理化의 過程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二次大戰後 우리나라의 漁業經營의 展開過程을 A. H. Cole教授가 指摘하는 企業家活動의 세 개의 重要한 過程인 ①革新(innovation), ②管理(management), ③外的諸條件에 대한 適應(adjustment to external conditions)의 [1] 展開樣相에 따라 본다면, 1957年以前 停滯的 狀態에 머물고 있었던 第一期, 1958年 遠洋漁業에 進出한 後 1976年 美國의 「漁業保存·管理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制定을 契機로 200海里 時代에 突入함으로써 우리 나라 遠洋漁業이 本格的으로 그 影響을 받기 始作하기 까지 遠洋漁業의 跳躍的 發展相에 의해 特徵지 워지는 第二期, 그리고 1977年 以後의 200海里時代에 접어들면서 沿岸國의 海洋規制에 의해 遠洋漁業이 經營體數나 漁獲量에서 減少되고 國內에 있어서는 比較的 經營이 安定的이라 할 수 있는 大型·中型機船底引網漁業이 主인 近海漁業과 非漁船漁業인 養殖業의 進展相에 의해 特徵지어지는 第三期로 區分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漁業의 發展段階相은 經營合理化에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는 時期라 할 수 있으나, 第一期는 漁業領域이 旣開發의 國內漁場에 限定되고 漁業經營의 成果도 科學的인 知識보다는 經驗的 知識 特히 漁撈長의 技能的 知識에 의거하는 段階이며, 積極的인 革新의 導入, 새로운 管理方式의 採用, 環境에의 積極的인 對應이란 諸側面이 相當히 缺如

1) 米川伸一, 『經營史學—生誕·現狀·展望—』, 東洋經濟時報社, 1973, p.69.

되어, 주어진 與件에 消極的으로 適應하며 經驗이 豊富한 漁撈長의 採用에 經營合理化의 優先順位를 賦與하던 時期로 「주먹九·九」式 合理化時期라 하겠다. 第二期는 새로운 海外漁場을 積極的으로 開發한 뿐 아니라 새로운 資本投下에 의한 漁船, 漁具, 漁業機器의 積極的인 導入과 海外進出을 위해 沿岸國의 關聯情報를 入手하여 活用하는 時期로서, 새로운 漁場知識과 이에 科學的으로 適應하려는데 經營合理化의 主眼을 두었던 段階라 하겠으며, 第三期는 200海里時代에 즈음하여 沿岸國의 資源내쇼날리즘(Resource Nationalism)에 의한 漁場規制와 더불어 減少되어 가는 水產資源에 對應한 經營合理化가 模索되고 國內市場의 再開發 乃至 加工業에의 進出등 水平的·垂直的 統合에 의한 合理化 施策이 講求되고 있을 뿐 아니라, 管理對象의 把握이 可能한 養殖業에의 進出이 顯著하게 나타나는 時期이다. 換言하면 沿岸國의 資源내쇼날리즘에 對應하여 海外漁場에의 入漁, 漁場의 共同開發, 合作漁業會社의 設立 등으로 나타나는 「資源外交」와 漁撈一邊倒의 經營形態에서 多角經營에 의한 經營成果의 增進, 對象把握可能型漁業(養殖業) 등에 의한 合理化段階가 第三期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漁業經營發展相의 三段階區分은 A. H. Cole教授가 말하는 企業家活動의 세개의 進化的 局面 즉 ①經驗的 企業家活動(empirical entrepreneurship), ②合理的·情報精通的 企業家活動(informed, or rational entrepreneurship), ③精緻的·認識的 企業家活動(sophisticated, or cognitive entrepreneurship)에 對應하는 것으로,[2] 漁業經營이 그 發展段階를 달리함에 따라 새로운 經營環境에 適應하기 위한 새로운 經營合理化의 過程을 맞이하게 됨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經營管理의 段階的 展開樣相은 바로 經營合理化의 段階的 展開樣相으로 理解되고, 또한 이것은 段階別로 別個의 合理化原理가 支配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時期的으로 그리고 發展段階的으로 一貫된 合理化의 原理가 時期와 發展段階에 따라 適用의 樣相을 달리할 뿐 아니라 產業에 따라, 時代에 따라, 地域에 따라 狀況適合的으로(contingently) 合理化가 追求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여기에 本稿에서는 漁業經營을 支持하는 合理化의 原理는 무엇이며 精緻的·認識的 企業家活動의 段階에 處해 있는 現段階의 漁船漁業經營一般을 對象으로 經營合理化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考察해 보기로 한다.

二. 經營合理化의 原理와 漁業經營

經營合理化가 意味하는 것은 바로 企業經營의 合理化이다. 그러나 經營學의 研究對象이 무엇인가에 대한 論議에서 그 對象을 「經營」에서 求했을 땐 經濟性의 原理가, 「企業」을 研究對象으로 했을 땐 營利性의 原理가 指導原理로서 經濟的 活動 乃至는 經營合理化의 過程을 規制하게 되고, 「經營」을 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 把握하는 所謂 經營經濟學派(說)에서 처럼 經驗對象으로 「企業」을, 認識對象으로 「經營」을 理解한다면[3] 經營合理化란 具體的이며 實踐的인 問題를 超越倫理的 原理인 經濟

2) A. H. Cole, 'What is Business History': K. A. Tucker (ed), "Business History", FRANK CASS & Co. LTD., 1977, p. 13.

3) 「經營經濟學說에 의하면 『經營經濟學의 對象은 經營事象의 經濟的 側面』으로서 『經營』이란 經驗對象의 『經濟的一面』을 認識對象으로 하는 獨立的 理論科學이며……이派의 典型的 見解에 의하면, 『經營 그 自體는 經驗의 複合體로서, 그것은 經濟的 意味를 몸에 지님과 同時에 技術的, 社會的, 法律的, 心理的, 生理的등의 여러 範疇를 달리하는 屬性을 內包하고 있다』……」 (山本安次郎 『經營學本質論(第三版)』, 森山書店, 1968, pp. 218~219.)에서 經驗對象으로서 「經營」은 그 屬性에 現實的인 企業과 經驗的 規範으

性原理에 의해 解決을 企圖해야 된다는 二律背反的 立場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企業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的이며 具體的 問題인 經營合理化의 問題가 企業의 具體的·實質的인 問題로서 實踐性 있는 解決策을 求하기 위해선 資本主義的 經營인 企業의 體制原理로서의 營利性原理가 經營合理化의 原理가 되어야 한다는 論理的 歸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보는 바 經濟性原理의 營利性原理에의 論理的 歸結에 대해서 藻利(Mohri)教授는 資本主義의 體制原理로서 理解되고 一般的·形式的 原理에 不過한 營利性原理가 企業의 運營原則으로 實踐原理가 되기 위해 現實의 企業에 內在的인 歷史的 具體性에 의해 把握되어야 할 必要가 있고, 또한 超越倫理的 原理인 經濟性原理는 超越的 規範에서 內在的인 規範으로 轉換하므로서, 즉 超越倫理的인 것이 아니고 一般的·形式的인 體制原理로서의 營利性原理를 歷史化하고 實質化하는데 成立하는 具體的 原理的인 것으로 理解함으로써 可能하다는 主張에 의해 統一化를 企圖하고 있다.[4] 이러한 藻利教授의 主張은 現實的으로 形成·存續하고 있는 社會的 시스템(system)으로서 企業을 制度的으로 理解할 때 비로소 可能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一段은 經營合理化의 原理가 營利性原理임을 理解하는 바이나, 漁業經營體의 絶對多數가 行動原理로서의 因習主義와 組織原理로서의 連帶主義와 結合되고 있는 欲求充足主義에 의해 支持되는 「漁家經營」인 漁業經營에 있어서, 合理主義(行動原理)와 個別主義(組織原理)와 結合되고 있는 營利主義(營利性原理)가 漁業經營一般의 經營合理化의 原理로서 妥當性을 갖는가의 如否가 問題된다.

經營合理化라 하면 經營에 있어서의 經濟的 合理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되는 바, 이러한 「合理化」의 概念에 의해 近代社會의 發展過程을 把握한 代表的인 學者가 바로 Max Weber임은 우리가 잘 아는 事實이다. Weber는 經濟的 合理主義(Wirtschaftsrationalismus)를 支持하는 據點으로서 經營(Betrieb)를 생각하고 있는데[5] 이 經營과 前述한 漁家經營을 包攝한 漁業經營一般에서 理解하고자 하는 經營과의 關係를 檢討함으로써 漁業經營合理化의 一般的 指導原理가 營利性原理임을 論究하여 보기로 하겠다.

Weber는 經營은 家政(Haushalt)에서 完全히 分離된 것으로 出現하는 것이나, 元來 未分化였던 것이 近代에 와서 兩者는 完全히 分離하게 되고, 이 經營과 家政의 完全한 分離란 事實이 經濟的 合理主義의 出現과 깊은 關聯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大塚(Ohtsuka)教授는 指摘하고 있다.[6] 여기에 家計와 結合된 概念으로 理解되고 있는 漁家經營이 家政과 完全히 分離된 것으로 理解하는 經營과 同一한 原理下에서 理解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의 解決이 課題로 提起되는 바이다.

Weber는 經營(Betrieb)이란 概念을 「一定種類의 持續的인 有目的行爲」라 定義지우고, 또한 經濟(Wirtschaft)란 概念은 「自己自身의 內部에 管理의 中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經濟經營이고 經營

로서 營利性 原理가 把握되고 認識對象으로서의 「經營」의 「經濟的一面」에선 抽象的 規範으로서 經濟性原理가 把握되며 「經濟的一面」을 經營이라 把握한 것은 「規範論學派에선 經營學의 研究對象은 企業이 아니고 經營(經營經濟 혹은 經濟經營)에 求해진다」(藻利重隆, 『經營學の基礎(改訂版)』, 森山書店, 1967, p. 34), 그리고 「企業(經營)의 目的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確立할 것을 學問的 課題로 한 것은 經營經濟學派이고 規範論學派였다」(藻利, 前揭書, p. 36)라는 藻利教授의 見解에 따른 것이다.

4) 藻利, 前揭書, pp. 36~37.

5) 大塚久雄, 「《Betrieb》と 經濟的 合理主義」, 大塚久雄(編), 『マックス・ウェーバー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1, p. 304.

6) 大塚, 前揭論文, p. 305.

的(betrieblich)으로 秩序지어진 持續的 經濟行爲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는 歷史的으로 條件만 充足되면 結局에 가선 經營(持續的인 有目的行爲)으로서 經營體를 構成하게 된다는 것이 大塚教授의 Weber에 대한 理解인 것이다.[7] 여기에서 充足되어야 할 條件이란 管理(Verwaltung)와 持續的인 有目的行爲를 말하는 것으로 理解되는데, 漁家經營의 經濟行爲가 欲求充足만을 指向하는 것이 아님은 漁家經營은 市場經濟를 떠나선 存在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通俗的으로 理解하는 漁家經營인 10屯未滿의 漁船漁業에 있어서 비록 그 經營規模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一定規模의 資本이 投下되어 있으며 이 資本은 農業의 土地 등과 달라 代替性, 陳腐性을 가진 生產手段에 投下되고 있다는데 市場經濟를 通한 資本의 效率的 運營이 持續的인 有目的行爲로서 要求되고 管理行爲가 隨伴되기 마련이다. 換言하면 漁業資本은 어떤 經營形態의 經營體에 의해 投下되든 市場經濟의 原理에 의해 運用될 때 비로소 資本價値의 維持·增大를 企圖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點, 農業에 있어서 土地에 投下된 資本은 市場經濟의 原理에 의한 管理過程이 存在하지 않더라도 그 價値는 永續的으로 維持될 수 있는데 漁業經營과 農業經營과의 사이에 根本的인 差를 볼 수 있다.

以上에서 論議한 漁業經營은 그 안에 欲求充足原理에 支配되는 絶對多數의 漁家經營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나 漁業經營一般의 指導原理로서 營利性原理의 否定可能性은 否定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漁家資金이 資本의 本來的 意圖에서 投下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實質的으로 經營의 持續的 維持를 위한 資本價値의 維持라는 面에서 市場經濟와 恒常的인 去來가 持續的인 有目的行爲로서 그리고 또한 管理를 隨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市場經濟와의 恒常的 去來關係와 管理의 存在란 事實은 漁業經營에 있어서 Weber가 말하는 「……貨幣計算(Geldrechnung)으로 나타나는 形式的 合理性(Formale Rationalität)이 市場關係 안에 貫徹되어 나아가, 또한 經營體의 內部에 있어서도 合理的인 『資本計算』(Kapitalrechnung)으로서 貫徹되어 가는……」 經濟的 合理主義가 現實的으로 成立하는 前提條件인 것이다.[8] 이를 좀 더 詳細히 考察하면 Weber는 合理的 經濟行爲의 諸形態로서 經濟行爲가 그의 目標로서 實現하는 것을 形態別로, ① 當該 經濟主體가 自由롭게 處分할 수 있는 效用給付를 ⓐ 現在와 將來와의 사이에(所謂,「貯蓄」으로서), ⓑ 現在에 있어서 많은 可能한 用途間에(限界效用均等의 法則에 따라) 計劃的으로 配分하는 경우, ② 消費할 수 있을 程度는 아니나 自由롭게 處分할 수 있는 財 즉 給付를 計劃的으로 運送하고 計劃的으로 製造하는 경우, ③ 效用給付에 對한 處分力을 自己 혼자서 全部 獲得하거나 혹은 他人과 共同으로 그 共同處分力을 獲得하는 경우로 區分하고 있다.[9] 이러한 合理的인 經濟行爲의 諸形態는 漁業經營을 包含한 모든 經營에서 恒常的으로 볼 수 있는 經濟現象이다. 漁業經營體 역시 持續體로서의 機能을 다하기 위해 資本 乃至는 諸生產手段 혹은 收益을 現在와 將來에 걸쳐 諸用途間에 計劃的인 配分行爲를 하여야 하고, 漁業經營의 漁業生產活動과 生產物의 處分活動은 偶然的인 것이 아닌 計劃的인 行爲이어야 하며, 또한 漁業經營 역시 經營體(Betriebsverband)로서 경우에 따라선(共同處分力 獲得의 경우) 管理團體(Verwaltungsverband)에의 統一的인 經濟的 指導나 交換에 의해[10] 處分力을 行使하는 등의 諸過程은

7) 大塚, 前揭論文, p. 309.
8) 大塚, 前揭論文, pp. 323.
9) M. ウェーバー(黑正, 青山譯), 『一般社會經濟史要論 上卷』, 岩波書店, 1973, pp. 9~10.
10) M. ウェーバー, 前揭譯書, pp. 10~11.

Performance를 다하기 위한 當爲的 過程인 것이다. 이러한 諸過程의 目標는 Weber에 의해 營利指向體로서 理解되는 經營이 營利目的 達成을 위한 下位目的의 機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下位目的的인 諸機能은 恒常的 去來關係와 管理를 前提로 하지 않고는 存在意義를 喪失하기에 이른다. 그 理由는 經營의 經濟的 合理性이 前述한 바 合理的인 貨幣計算에 의해 貫徹되어 가는 過程에서 經濟的 合理性에 대한 Performance는 貨幣計算에 의해 表現되고, 貨幣計算의 結果는 새로운 經濟的 合理性의 契機가 되어 相互作用的 關係를 連結시켜 나가고, 나아가 經濟的 合理性이 推進되어 가는 構造的 關係를 形成하기에 이르고, 이 構造的 關係는 經營의 目的과 合理的 諸經濟行爲의 機能間에 存在하는 시스템的 構造에 의해 支持되고, 이러한 支持關係는 時系列的인 貨幣計算에 의해 可能케 되는데, 이를 위해 恒常的 去來關係와 管理에 의한 持續的인 有目的行爲가 必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經營內의 合理的 諸經濟行爲의 經營體的 統一原理가 다름아닌 營利性原理인 것으로, 合理性의 成就程度가 營利性에 의해 測定되는데 대해선 經營一般과 漁業經營間에 差는 認定될 수 없다.

以上에서 經營合理化의 指導原理가 企業經營의 指導原理인 營利性原理이며 合理化의 成就程度는 營利性에 의해 測定되어야 함을 吟味한 바이나, 앞서 營利性原理가 企業運營의 實踐原理가 되기 위해선 現實의 企業內에 內在的인 歷史的 具體性에 의해 把握되어야 한다고 指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藻利教授는 企業內에 內在하는 現實的인 歷史的 具體性으로 企業의 固定化現象을 把握하고 이에 對應하여 營利性原則을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로 理解하고 있다.[11] 즉 企業規模의 擴大는 固定資本의 投資擴大에 의해 資本의 固定化現象이 나타나고, 一段 雇傭된 從業員은 繼續雇傭을 願하며, 또한 社會保障制度와 勞動組合運動의 進展에 의한 雇傭主의 解雇權의 制約, 그리고 企業特有의 Know-How의 維持를 위해 일에 精通한 從業員의 繼續確保의 必要性등으로 말미암아 勞動固定化現象이 나타나는 바, 資本의 固定化現象에 對應하여 企業의 維持를 위한 固定資本財의 維持·擴大의 合理的 原理가 總資本利潤率의 極大化原理(G/K의 極大化 : K…總資本, G…利潤)이고 勞動의 固定化現象에 따라 나타나는 一般的 現象인 賃金額의 上昇現象에서 勞使間의 協調的 關係의 改善·維持를 指導하는 原理가 總資本賃金率의 極大化原理(W/K의 極大化 : W…賃金總額)이다. 이 두 原理의 總合이 〔G/K+W/K=(G+W)/K〕의 極大化인데 〔G+W〕가 附加價値를 意味하기때문에 〔(G+W)/K〕의 極大化가 營利性 原理의 現代的인 企業內在化 原理로 理解되게 된다.[12] 이와 같이 經營合理化의 指導原理를 營利性原理로, 그리고 營利性原理를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 原理로 理解하게 된 論理的 過程에서 附加價値와 經營合理化의 直接的 關聯이 吟味되어야 할 것이다.

池內(Ikeuchi)教授는 經營合理化를 生產性의 向上을 위한 運動으로 理解하여 合理化와 生產性運動은 本質的으로 同一한 것이나, 同一內容에 대해 別個의 表現을 한것은 合理化運動이 資本利潤率의 增進을 위한 合理化를 意味하는데 대하여 生產性運動은 國民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根本目標로 하고 더 나아가 雇傭의 增大와 分配의 公平을 期한다는 意味에서 合理化運動과는 그 當面의 目標가 相異한데 用語를 달리하게 된 緣由를 求하고 있다.[13] 오늘날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크게 論議되고 企業活動이 利害關係者集團과의 關係의 改善·維持에서 地域社會와의 關係의 維持·改善 그리고 社會的

11), 12)藻利, 前揭書, 第15章, 參照.
13) 池內信行, 『經營經濟學總論(全訂版)』 千倉書房, 1953, p. 278.

文化活動에의 積極參與에 까지를 그의 社會的 責任의 內容으로 하여 經營活動의 內容이 擴大되어가고 있는 實情에서, 池內教授가 經營合理化 乃至 生産性運動을 國民生活의 水準向上을 根本目標로 한 生産性過程이란 次元에서 把握하려 한 것은 企業을 社會의 下位體系(sub-system)로 把握하려는 시스템的 思考에서 由來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企業이 社會的 責任에 대한 指標로서 附加價値指標가 重要한 位置에 놓여 있음은 山上(Yamagami) 教授에 의해 指摘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表-1〉에서 보듯이 日本生産性本部의 『總合社會的 責任指標』中 經營責任指標의 生産性指標에서 粗附加價値勞動生産性의 웨이트(Weight)가 57, 成長性指標에서 附加價値性上昇率의 웨이트가 59로서, 企業

〈表-1〉 總合社會的 責任指標 (日本生産性 本部)

1. 經營責任 指標(31)	
收益性 指標	(29)
自己資本化率	(37)○
配 當 率	(29)○
資本金利益率	(34)○
安全性指標	(22)
流動 比率	(44)○
自己 資本比率	(56)○
生産性 指標	(28)
粗附加價値勞動生産性	(57)○
設備効率	(43)○
成長性指標	(21)
增 益 率	(41)○
附加價値生産性上昇率	(59)○
2. 從業員福祉責任指標	(33)
經濟福祉指標	(38)
30歲成定內賃金	(36)○
法定外福利厚生費	(14)○
退職金平均額	(16)○
時間外手當割增率	(11)○
停年年齡	(15)○
勞使의 所得隔差	(8) △
勞動環境指標	(28)
月平均實勞動時間	(22)△
時間外勞動時間	(12)△
年間所定休日日數	(13)○
年休消化率	(11)○
經濟參加시스템	(17)○
勞動災害率	(18)○
파업에 의한 勞動損失日數	(7) △
生活環境指標	(19)
社宅面積	(23)○
住宅貸付金最高限度額	(39)○
互年後諸制度	(38)○
文化教育指標	(15)
教育訓練費用	(13)○
文化體育費用	(47)○
3. 狹義의 社會的 責任指標	(36)
消費者 關係責任指標	(39)
苦情處理機關	(31)○
모니터 制度	(17)○
廣告活動체크機關	(21)○
獨禁法景表法違反	(31)△
住民關係責任指標	(35)
一般廢棄物處理	(20)○
公害關係涉外機關	(8) ○
公害監視機關	(8) ○
公害防止管理者	(5) ○
公害防止關聯支出	(18)○
廣告와트라블	(15)△
勞使의 公害防止協定	(11)○
地域의 參加	(15)○
去來業者關係責任指標	(26)
下請單價上昇率	(40)○
下請과의 文書交換	(25)○
下請代金支拂期間	(35)△
4. 國際關係責任指標	(○)

註 1) ( )內의 數字는 各項目 內部의 웨이트(weight)로 合計가 100이 된다.
2) ○표는 "+", △표는 "−"의 指標의 性格을 表示한다.

山上達人, 『附加價値分析』, 稅務經理協會, 1978, p. 238.

의 社會的 責任의 附加價値指標에 대한 依存度가 相當히 높다는 事實이 指摘되고 있다.[14] 여기에서 資本利潤率의 增進으로 理解되여 온 經營合理化가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經營管理안에 包攝시킴에 따라 池內教授에 의해 生產性運動으로 理解되고, 實質的으론 附加價値에 의해 把握될 性質의 것으로 歸結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P.F. Drucker教授도 「附加價値(Contributed Value)는 費用配分이 經濟的으로 有意義하다면 生產性分析에 利用될 수있다.」[15]고 指摘하고 있다. 여기에서 費用配分의 經濟的 有意義性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分明치 않으나, 「組織構造…, 企業에 있어서 知識의 利用 혹은 未來의 經營者의 質등은 生產性의 基本的 要因들이다.」[16]는 Drucker의 指摘은 量的 概念인 附加價値에 대한 非量的 즉 質的 要因의 影響力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을 表明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質的 要因에 대한 費用配分이 適切할 때 眞正한 生產性의 測定手段으로서 附加價値가 有意義한 作用을 하게 됨을 示唆하는 것이라 理解된다. 이것은 間接的·質的 要因이 直接的·量的인 生產性·附加價値의 增大에 대해 갖이는 規定性을 指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山上教授에 의해선 直接 言及되진 않았으나 〈表-1〉의 從業員福祉責任指標와 狹義의 社會的 責任指標등의 項目에 所要되는 費用이 附加價値의 構成項目이고 이들 項目에 대한 適切한 費用配分은 生產性의 增大에 寄與하게 됨은 쉽게 理解할 수있다. 그리고 生產性은 附加價値에 의해 測定된다는 Drucker教授의 말은 〈表-1〉의 生產性指標와 成長性指標 가운데의 設備效率과 增益率은 附加價値生產性을 있게한 施設의 運用効率(設置効率)과, 結果의 利潤에의 寄與率(增益率)의 表現이기 때문 生產性 혹은 成長性의 補助的·副次的 表現이라 理解할 수 있다. 그리고 企業의 社會的責任이 問題視되고 있는 現段階에서 經營合理化는 以上에서 考察한 池內教授의 「經營合理化—生產性」, 山上教授의 「社會的 責任—附加價値」, 그리고 Drucker教授의 「附加價値—生產性」의 諸關係의 結合關係에서, 附加價値의 問題로 歸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附加價値 乃至 總資本에 대한 附加價値率의 極大化를 實現하는 것이 企業倫理로서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原理가 經營合理化의 現代的·狀況適合的 妥當性을 갖는 것이라 理解케 된다.

漁業經營一般은 營利性 原理에 의해 그 經營이 指導되어야 함은 이미 吟味한 바이고, 이 때 營利性原理는 現代的·狀況適合的 意味에서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原理로 理解하였다. 營利性原理의 이러한 理解方法은 現代企業의 規模擴大에 따른 固定性과 社會的 責任이란 企業의 性格과 存續을 위한 當爲的 行爲이란 側面에서의 接近인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關係와 漁業經營一般과의 關係에 대해 考察함으로써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原理가 漁業經營의 合理化原理로서의 適用性을 檢討하기로 하겠다. 200海里時代가 沿岸國의 資源내셔날리즘에 觸發된 것이나, 이는 他國漁船에 의한 沿岸魚資源의 捕獲으로 말미암은 魚資源의 減少 乃至는 枯渴危機現象에 基因하는 바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現象은 漁業生產活動의 場所인 漁場의 世界的 荒廢化現象 乃至 그 可能性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換言하면 漁業經營環境의 惡化로 因한 漁業外部不經濟의 深刻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責任은 漁業經營이 當面하는 가장 重大한 社會的 責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漁場維持問題는 國際的 次元에서 論議되고 있

14) 山上遐人, 『附加價値分析』, 稅務經理協會, 1978, p. 237.
15) D. F. Drucker, "MANAGEMENT", HARPER & ROW, 1974, p. 113.
16) Drucker, ibid, p. 113.

고 또 한 社會的 富로서 魚資源의 維持·保存이라는 點에서 肯定되나, 漁場維持에 의한 直接的 受益者인 漁業經營者의 責任이 回避될 수도 없는 것이다. 換言하면 漁業經營體에 의한 社會的 富인 魚資源의 維持·保存 즉 漁場維持는 漁業經營의 維持·存續과 漁業 社會의 發展을 뜻하고, 漁業社會의 發展은 漁業經營의 維持·發展에 作用한다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論에서 社會形成體로서 漁業經營體가 負擔해야 할 가장 重要한 責任이 漁場維持責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漁場維持責任은 漁文化의 振興이란 社會的 責任領域에 까지 擴大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漁場維持에 대한 責任이 漁業經營體에 의해 負擔되어야 할 當爲性을 認識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漁場維持의 問題를 漁文化의 振興에 까지 擴大시킨 것은 C.C. Walton 教授의 社會的 責任의 最終的인 期待水準(expectional level)에서 社會的 責任의 受益者로서 文化共同體(Cultural Community)와 漁業經營體와의 關聯이란 次元에서 漁業經營體도 文化共同體의 成員으로 社會的 責任을 負擔함은 當然하기 때문인 것이다.[17]

다음 企業의 固定性과 漁業經營體의 關係를 보기로 하겠다. 우리는 앞서 企業의 固定性을 資本의 固定性과 勞動의 固定性으로 分化시키고 資本의 固定性은 固定資本의 投下의 增大에서 理解한 바 있다. 지금 固定資本의 投下指標인 固定長期適合率을 漁業經營體에 대하여 볼 것 같으면, 〈表-2〉에

〈表-2〉 漁業經營體의 固定長期適合率 단위 : %

구 분			고정장기적합율
개량식대모망			96.9
소대망			101.3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118.9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33.7
동해구기선저인망			180.8
서남구기선저인망			98.3
동해구트롤			66.5
근해포경			85.8
대형선망			124.8
기선권현망			139.7
근해통발			88.3
안강망	(근해)	30~50 ₩	103.7
		50~80 ₩	117.1
		80~100 ₩	107.3
		100 ₩ 이상	122.2
		평균	109.3
잠수기			100.0
삼치유망			102.2
기타근해 (동해안)		10~30 ₩	94.6
		30~50 ₩	98.7
		50~80 ₩	99.7
		80~100 ₩	87.6
		평균	96.5
기타근해 (서남해안)		10~30 ₩	99.2
		30~50 ₩	101.3
		50~80 ₩	110.3
		평균	98.2
수산청장 허가 어업평균			109.4
연안어업			104.9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82년도』

17) 孔龍植,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公害」『釜山水產大學論文集 第24輯』, 1980. 6. pp. 41~43, 參照.

서 相當數의 業種이 標準比率 100%를 넘고 있으며 平均 108.6%를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固定長期適合率의 主構成因子인 漁船의 耐用年數는 鋼船에 있어서 遠洋漁船의 경우 總噸數 100噸 以上은 10年, 未滿은 7年, 遠洋漁船 以外의 경우 100噸 以上이 12年, 未滿은 9年이고, 木船은 6年으로 되어 있다.[18] 漁船의 固定資産中 차지하는 比率은 水産廳 許可漁業의 平均値가 80.3%(수산어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82年에서 算出)인 바, 漁業長期資本의 約 80%가 6年以上의 耐用年數를 가진 漁船에 投下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우리는 漁業資本의 固定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勞動의 固定性은 企業化된 遠洋漁業經營體에서도 雇傭契約期間은 母港에서 出港하여 歸港時까지가 通例로 되어 있고, 沿·近海漁業의 경우 實質上 그 雇傭이 固定的이라 볼 수 있는 幹部船員에서도 漁期當 雇傭契約이 主로 되어 있다. 이러한 斷續的 雇傭現象에서 勞動의 固定性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勞動의 固定性의 數式化에서 본 總資本賃金率(W/K)은 漁業賃金이 주로 짓가림制(歩合制)賃金이고 이 賃金形態가 漁船員의 自律的 管理指向性賃金形態라는 그 管理的 性格으로 因하여[19] 總資本賃金率은 極大化를 指向하기 마련이다. 換言하면 짓가림制下에선 經營者의 總資本利益率極大化指向的 行動方式이 漁船員側에서 總資本賃金率極大化의 行動方式(비록, 賃金配分率인 "짓"數에 制約을 받기는 하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은 짓가림制 賃金形態가 年功이 아닌 職級에 의해 規定되는 "짓"數에 의해 職務給的인 性格과 成果給的인 性格을 아울러 갖는 特異性으로 漁船員은 높은 "짓"數와 높은 成果를 期待하여 比較的 自由롭게 經營體를 移動하게 되고, 여기에 優秀한 船員確保를 위한 經營側의 方針과의 競合作用으로 總資本賃金率의 極大化現象은 産業的 特色으로 規定되게 된다. 이것을 漁業勞動의 擬固定性이라 規定지우고자 하며, 여기에 앞서 吟味한 漁業資本의 固定性 그리고 漁業經營體의 社會的 責任의 當爲性이 結合되는 過程에서 漁業經營 乃至 漁業經營合理化의 指導原理로서 總資本附加値率의 極大化原理가 現實的·狀況適合的 原理임을 理解하기에 이르게된다.

三. 漁業經營合理化와 費用配分

앞서 經營合理化는 根本的으로 그 意圖하는 內容이 널리 國民의 生活水準의 向上, 雇傭의 增大, 分配의 公平의 實現에 있는 生産性運動과 같은 것임을 指摘한 바 있다. 이를 좀 더 具體化시키면

① 生産性의 向上은 究極에 있어서 雇傭을 增大시키는 것이나, 過渡的인 過剩人口에 대해선 國民經濟的 觀點에 서서 可能한 限 配置轉換 其他에 의해 失業을 防止하도록 官·民協力하여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는 것이며,

② 生産性向上을 위한 具體的 方案에 대해선, 各 企業의 實情에 맞게 勞使가 協力하여 이를 硏究하고 協議할 것이며,

③ 生産性向上의 諸 成果는 經營者·勤勞者, 그리고 消費者에 國民經濟에 實情에 對應해서 公正게 分配할 것 등이 生産性運動의 三原則이라 池田敎授는 指摘하고 있다.[20]

18) 姜吉遠·金詳九, 『水産會計』 韓國稅務經營社, 1982, p. 104.
19) 孔龍植, 「짓가림制(歩合制)의 管理論的 性格에 대한 試論」, 『수산경영론집』 Vol. XII, No. 1, 韓國水産經營學會, 1981. 6. 30. 參照.
20) 池內, 前揭書, p. 302.

이러한 生産性運動의 三原則은 經營合理化 乃至 生産性向上의 內容 自體에 關한 것이라기 보다는 生産性運動의 方向을 規定하는 倫理的 規範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즉 指導原理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이러한 原則을 具體化시키는 것으로서 經營管理 即自的인 生産性이 問題되어야 할 것이다.

Drucker敎授는 生産性을 經營者의 能力에 대한 第一의 判定者(the first test)이며 生産性의 測定은 企業內의 管理單位體間의 經營을 比較하여 또한 他企業과의 經營比較를 위한 最上의 尺度라 規定하고, 나아가 企業全體에 대한 生産性의 規定을 可能케 하는 基本槪念이 附加價値(Contributed Valne)라 말하고 있다.[21]

위의 池內, Drucker 兩敎授의 말에서 우리는 經營原理는 他企業 또는 他管理單位體와 附加價値를 比較하여 比較優位에 있게끔 費用의 經濟的 配分과 收益의 增大를 企圖한 結果가 雇用의 增大, 勞使協力, 公正한 分配에 直結되도록 하는 管理活動이 다름아닌 經營合理化라 理解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經營合理化는 우선적으로 費用의 經濟的 配分과 收益의 增大示案이 論議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漁業經營에 있어서 費用의 經濟的 配分狀況을 檢討함에 있어서의 分析手段이 무엇인가가 우선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費用配分分析에 있어선 매크로(macro)的 配分分析과 미크로(micro)的 配分分析으로 區分할 수 있다. 매크로的 配分分析이란 個別費用의 合算額을 總收益과의 關係에서 漁業費用을 매크로的으로 配分狀況을 檢討하여 費用配分의 向方을 規定하기 위한 情報를 얻기 위해 行하는 分析方法을 말한다. 매크로的 配分分析을 위해 利用되는 方法으로 損益分岐點分析을 들 수 있다. 이 分析에 있어선 損益關係에서 損益均衡點인 損益分岐點을 求하는 경우(俠義의 損益分岐點)와 賣上高·損·益의 關係(Volume-Cost-Profit Relationship)에서 一定 利益을 올리는데 必要한 損益分岐點을 求하는 경우(廣義의 損益分岐點)가 있다. 이러한 分析觀點에서 漁業經營의 特質은 他律的으로 決定되는 收益規定要素인 生産物價格(魚價)에서 出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 工産品에 있어선 製造原價에 一定比率의 利潤을 加하여 販賣價格을 決定하는데 比하여 魚價는 原價와는 乖離된 狀況에서 決定되기 때문에 一般 工産品에선 損益分岐點에 適應하기 위해 販賣量 中心의 마아케팅政策이 要求되는데 대하여 漁業經營에선 價格中心의 마아케팅政策이 重要性을 갖게 된다. 이것은 工産品에서 販賣量과 收益과는 正相關關係를 보이는데, 漁業經營에선 漁獲量이 過多할 경우 收益은 漁獲量이 적었을 때의 경우 보다 減少될 수도 있다는데서 販賣量과 收益과의 사이엔 逆相關關係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데 緣由한다. 이 問題를 지금 損益分岐點과의 關係에서 檢討하기 위해 F. J. Smith氏의 分類에 따라 漁用費用項目을 보면 變動費엔 ①漁船修理·維持費(Boat repair and maintenance), ②漁具·電子機器修理費(Fishing and electronic gear repair), ③燃料·油類·濾過用資材費(Fuel, oil and filters), ④主副食費(Food), ⑤陸揚費(Unloading), ⑥船員分配分(Crew-share) 등이 속하고, 固定費엔 ①利子(Interest on Investment), ②減價償却費(Depreciation). ③保險料(Insurance), ④漁船修理·維持費, ⑤漁具·電子機器修理費, ⑥法的·會計手數料(Legal and accounting), ⑦碇泊手數料(Moorage) 등이 속하는데 漁船修理·維持費의 變動費와 固定費間의 配分率은 70%, 30%이고 漁具·電子機器修理費의 變動費와 固定費間

21) Drucker, ibid, pp. 111~112.

配分率은 90%, 10%로 되어 있다.[22] 이란 諸費用 가운데 一般製造業에서 固定費에 속하는 賃金이 漁業經營에선 變動費에 속하고 있다. 漁業經營上 이와 같은 費用配分의 特色이 매크로的 配分分析에서 가지는 意義를 〈그림〉에서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賣上高 100%일 때 固定給制와 짓가림制의 兩 賃金形態下의 賃金額이 같은 金額으로 맥시멈에 이른다는 前提에서, 賃金形態가 固定給制일 때 總費用線上에 對應하는 損益分岐點이 A이나, 짓가림制로 賃金形態를 轉換시키면 固定費線은 Ⅰ에서 Ⅱ로 下降하고 損益分岐點은 總費用線Ⅱ와 賣上高線과의 交叉點 B로 下降移動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짓가림制 賃金形態를 採用하고 있는 漁業經營에서 賃金費用을 變動費로 轉換시킨 結果 利潤獲得의 機會가 A에서 B로 損益分岐點이 移動한 만큼 增大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고 賣上高 100%일 때 兩 賃金制度下의 賃金額이 同一規模로 맥시멈에 이른다는 것은 賣上高가 同一規模이면 總資本賃金率의 極大化作用으로 賃金 역시 同一規模로 맥시멈(〈그림〉의 M點)에 이른다는 理論的 前提에 依據하고 있다. 이러한 假定은 經營者의 直接的 統制가 存在하지 않는 海上이란 特殊經營環境에서 自主管理的 勞動으로 行해지는 漁業勞動의 特殊性이 總費用의 構成에 대하여 가지는 寄與度가 最終的으로 固定給制下의 經營環境에서와 同一하다는 前提에서 可能하게 된다. 그리고 Smith氏의 費用把握에서 漁船修理·維持費와 漁具·電子機器修理費를 變動費와 固定費로 分割하고 있는데, 分割比率如何에 따라 賃金에서 말한 바와 같은 結果를 얻게 된다. 여기에 매크로的 費用配分의 合理性 如何는 미크로的 費用配分의 合理的 如何에 크게 依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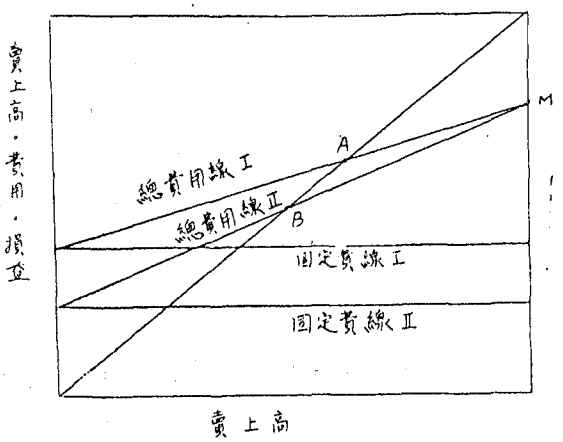

〈그림〉 固定費·變動費의 配分과 損益分岐點

이와 같이 變動費와 固定費로 費用을 兩分하는 損益分岐點分析을 通한 매크로的 配分分析은 賃金이 50%以上의 附加價値構成比를 가지는 漁業經營(近海許可漁業의 경우, 賃金의 平均附加價値構成比는 54.5%임)이[23] 賃金을 變動費로 取扱될 경우 앞서 考察한 바와 같이 利潤獲得機會가 增大됨은 生産活動이 自然的 條件에 의한 制約이 크고 原價와 乖離되어 他律的으로 魚價가 決定하는 등 經營不安要因이 큰 漁業經營에 있어선 經營合理化의 重要方策으로 認識된다. 그러나 漁業經營合理化의 原理로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原理를 理解하고 이의 構成原理의 하나로 總資本賃金率의 極大化를 把握한 것은 本來가 現代企業의 勞動의 固定性에 따른 賃金費用의 上昇엔 勞動力의 最高能率的 利用 以外에 "Will to Wok"의 問題로서 「일」給이 아닌 「生活」給으로서의 賃金에 대한 配慮가 內在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漁業賃金의 固定給化가 漁業經營合理化의 內容構成因子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損益分岐點分析上 損益分岐點의 上昇을 보게 되고 賣上高·損·益의 關係에서 利潤獲得機會의 縮少가 隨伴된다. 그러나 他律的인 魚價決定으로 因한 짓가림制下의 賃金變動과는 無關한 固

22) F. J. Smith "The Fisherman's Business Guide", International Marine Publishing Co., 1975, p. 36.
2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경영 조사 보고 1982년도』, p. 42.

定給으로서의 「生活」給의 導入은 損益分岐點의 上昇에 의한 附加價値의 增大可能性을 期待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漁業經營合理化의 指導原理로서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原理의 適應性을 認識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漁業經營에 있어서 매크로的 配分分析으로 損益分岐點分析을, 그리고 主로 最大의 費用要素인 賃金을 主內容으로 考察한 바 있으나, 다음엔 미크로的 配分分析에 대해 우리 나라의 沿近海漁業을 中心으로 考察하기로 하겠다. 미크로的 配分分析은 費用構成要素를 個別的으로 그리고 他構成要素와의 關係分析을 말하나 費用節約에 의한 效果로 生產性을 높이고 附加價値率을 增大시키는데 考察의 中心이 있게 마련이다.[24]

近海漁業에 있어서 1981年의 一航海當 經營結果를 1980年과 比較해 볼 때 漁獲量은 5.0%, 漁業收入은 9.5%, 漁業支出은 8.7%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漁業收入에서 漁業支出을 控除한 漁業粗利潤은 32만8,000원(1980年)에서 37만4,000원(1981年)으로 14.0%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들 4者間의 大小關係를 보면 〔漁業粗利潤增加率>漁業收入增加率>漁業支出增加率>漁獲量增加率〕의 關係樣相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漁業收入의 增加率이 漁獲量의 增加率을 上廻하고 있는 것은 魚價의 上昇效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近海漁業經營에서 〈表-3〉의 主要原價構成要素 가운데 賃金을 除外한 他費用인 燃料費, 漁具費, 主副食費, 修理費, 容器代 등 原價構成要素의 上昇率은 39.4%로 漁業收入의 上昇率 9.5%에서 魚價의 上昇效果에 의한 것으로 看做되는 漁業收入增加率 9.5%와 漁獲量增加率 5.0%間의 差인 4.5%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은 漁業經營에 대한 鉄狀價格差의 影響程度가

〈表-3〉 어업비용 주요 구성 요소 단위 : 천원

비용요소		연안어업					근해어업				
		1980년		1981년		증감(%)	1980년		1981년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어업비용		7,244	100	12,807	100	76.8	61,437	100	74,362	100	21
주요원가구성요소	임금	2,865	39.5	6,143	48	114.4	23,753	38.7	24,749	33.3	4.2
	연료비	1,055	14.6	1,493	11.6	41.5	13,587	21.1	20,281	27.3	49.3
	어구비	665	9.2	648	5.1	-2.6	3,225	5.2	4,749	6.4	47.2
	주부식비	701	9.7	821	6.4	17.1	1,854	3.0	2,499	3.4	34.8
	수리대	441	6.1	532	4.2	20.6	4,153	6.8	4,408	5.9	6.1
	용기대	80	1.1	21	0.2	-73.8	2,200	3.6	2,942	4.0	33.7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1982年』에서 작성.

甚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러한 鉄狀價格的 現象이 支配的인 狀況에서 漁業收入의 增加率이 漁業支出의 增加率을 上廻한 것은 漁業經營에서 費用節約 혹은 費用의 經濟的 配分에 의한 效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一航海當 現象에 比하여 年間 現象을 보면 近海漁業의 漁業收支比率(漁業費用÷漁業收入)이 1980年과 1981年에 各 84.3%, 83.6%인데 대하여, 沿岸漁業은 1980

24) 미크로的 配分分析의 內容은 『새어민』誌 1983年 5月號에 揭載한 拙稿 「人件費·燃料費 節約이 合理的 經營의 길」의 一部를 修正加筆한 것임.

年, 1981年 다 같이 77.3%로, 近海漁業에서 收入에 대한 0.7%의 費用節減의 効果를 볼 수 있을 뿐 一航海當 現象에서와 같은 費用節減에 의한 合理化現象은 볼 수 없다. 지금 〈表-3〉에 의거하여 미크로的 費用配分狀況의 分析을 企圖하여 보면, 賃金에 있어서 近海漁業에 있어서 賃金의 漁業費用 構成比는 1980年에 38.7%, 1981年에 33.3%인데 比하여, 沿岸漁業은 1980年 39.5%, 1981年 48.0%이고 金額에 있어서 114.4%의 增加를 볼 수 있으며 漁業費用의 約半에 達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沿岸漁業의 經營實績에서 賣上高漁業利潤率은 1980, 1981年 다 같이 22.7%로 變動이 없는 대신에 總資本利潤率은 1980年의 28.1%에서 1981年은 66.6%로 38.5%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原因은 1981年에 있어 前年對比 負債를 66.1% 減少시킴으로써 利子支拂額의 減少를 招來케 하고, 또한 總資本回轉率을 1980年의 1.5回에서 1981年 2.9回로 增加시킨 만큼 資本의 效率的 運營이 賃金의 上昇部分을 커버하고도 利潤發生의 契機로 삼은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資本費用의 節減에 의해서 換言하면 非主要原價構成費用인 營業外費用의 合理的 配分에 의한 것이라 理解된다. 짓가림制賃金制度에 있어서 漁業收入의 增大에 따라 比例的으로 賃金의 上昇을 實現하면서도 賣上高漁業利潤率에 變動이 없었다는 것은 營業利潤率의 增加機會가 賃金增加率의 極大化 傾向에 의해 解消되고 代身 資本費用의 減少란 費用配分의 效果로 總資本利潤率의 上昇을 結果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漁業經營의 미크로的 費用配分을 收支比率, 利潤率 그리고 賃金을 中心으로 考察한 바 있으나 다음은 賃金에 버금가는 費用要素인 燃料費를 中心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燃料費가 漁業費用 가운데 차지하는 比重은 沿岸漁業이 11.6~14.6%, 近海漁業이 21.1~27.3%으로, 1980~1981年間 沿岸漁業에서 費用構成比上 3.0%의 減少를, 金額으로 41.5%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表-3〉). 燃料費는 賃金이 賣上高比例的 費用인데 대하여 航海距離比例的 費用이다. 水產業協同組合의 油類供給價格의 變動狀況을 보면 1980年 1月 29日의 價格變動以後 1981年 2月 1日 變動時까지 適用된 重油 D/M 當 價格이 16.144원이던 것이 1981年 11月 29日의 價格變動에서 38,925원으로 241.2%의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25] 油類價格의 上昇率이 燃料費의 上昇率 41.5%(沿岸漁業), 49.2%(近海漁業)를 約5倍 上廻하고 있어 漁船의 航海距離의 縮少를 指摘하고 있으며, 特히 近海漁業에 있어선 1981年은 前年에 比해 出海日數가 171日에서 166日로 5日間의 減少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比해 沿岸漁業은 103日에서 137日로 34日間 增加하고 있어서 日當 出漁距離의 短縮을 示唆하고 있고, 더구나 漁業費用의 增加(沿岸漁業 5,563천원, 近海漁業 12,925천원)에 차지하는 燃料費의 比重은 沿岸漁業이 7.9%, 近海漁業이 51.8%이다. 이러한 事實이 무엇을 意味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吟味하여 보면, 沿岸漁業에 있어서 油類價格 上昇率의 約 5分之1에 該當하는 燃料費 增加로 30日이나 出漁日數가 增加했음에도 漁業費用 上昇에의 影響程度가 7.9% 밖에 안되는 것은 漁場選定과 出漁一回當 航海距離의 經濟性을 높이기 위한 努力이 있었던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近海漁業에 있어선 前述한 바 事實上 出漁日數의 短縮이 있었다. 지금 近海漁業에 있어서 出漁日數와 燃料費와의 關係를 보면 出漁日當 燃料費는 1980年 80천원, 1981年 122천원인데 油價上昇率 241.2%를 逆算하여 1980年의 出漁一日當 燃料費를 推定하면 193천원이 된다. 이에서 1981年의 出漁一日當 航海距離는 1980年의 63.3%

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 20년사』, p.323.

(1981年의 燃料費÷1980年의 燃料費)에 該當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推定事實은 航海當 出漁距離 즉 漁撈活動의 縮少를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漁撈活動의 縮少傾向에도 不拘하고 航海當 漁獲量이 增加했던 것은 역시 燃料費의 效率的 利用의 結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燃料는 漁業活動의 機動化가 더욱 切實히 要求되는 現實情에서 換言하면 沿·近海魚資源의 枯渴·減少가 論議되고 200海里로 因한 沿·近海漁場에서의 退逐現象이 甚해 가는 海洋事情으로 새로운 漁場의 探索 혹은 魚族의 洄游路를 앞지르는 등의 漁撈努力에 대한 現實的 要求로 航海日數, 航海距離의 增大가 隨伴된다는 事實에서 燃料費의 增加가 要請되며, 이의 實現없이는 漁業活動의 縮少指向性은 不可避하게 된다. 漁業經營管理活動의 行動原理가 投下額에 比해 產出量을 極大化시키려는 經濟性原理일 때 航海日數와 航海距離의 增大가 資源縮少에 基因한다면 燃料費의 經濟性은 低下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漁場—航海—燃料費—管理活動의 行動原理의 聯關構造下에서 航海當 出漁距離의 縮少에도 앞서 指摘한 바 漁獲量의 增加를 가져온 것은 燃料의 效率的 利用에 의한 合理的인 漁船運用에 의한 것으로 解釋되어 當然하다. 이러한 實情에서 燃料費와 效率的인 미크로的 費用配分과의 關係는 漁船運用의 合理化에 의한 運航時間의 短縮으로 燃料費를 節減시키는 直接的인 燃料費의 配分方法과 他費用의 節約으로 燃料費의 增大를 相殺시키는 間接的 配分方法이 생각된다. 直接的인 方法엔 풀(pool)制的인 漁場探索의 實施로 個個의 漁船으로 하여금 漁場探索 活動을 省略시키는 方法이 있을 수 있고, 間接的 方法으로는 漁業生產活動에 대해선 間接的인 一般管理費 가운데 營業外費用을 減縮시킴으로써 費用配分의 合理化를 企圖하는 方法 등이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 單位當 出漁距離의 減少가 漁獲量과 漁業收入의 增大를 가져오고 總資本利潤率의 增大를 볼 수 있었던 것 등은 漁業經營體 그 自體의 立場에서 볼 때 直接的이고 間接的인 方法의 合理的 結合에 의한 것으로 理解하고 싶다.

다음 漁業經營에 있어서 費用構成의 웨이트의 順序로 볼 때 賃金, 燃料費가 一, 二位를 차지함은 〈表-3〉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漁具費, 主副食費가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漁業經營에 대한 費用의 側面에서 必要不可缺의 緊要度를 보면 賃金, 燃料費, 漁具費, 主副食費는 金額의 크기에 差가 있으나 緊要度라는 質的 面에서 何等의 差를 認定할 수 없다. 燃料費와 漁具費는 物的 生產手段의, 賃金과 主副食費는 人的 生產手段의 活動源泉的 費用으로 合理化란 次元에서 無理한 費用節減의 效果를 期待하는 것은 漁業活動 自體의 萎縮을 自招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粗放的인 費用管理가[26] 經營合理化로서 妥當性이 認定될 수 없는데 合理的 費用管理로서 合理化가 追求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漁具費와 主副食費의 合理化問題를 생각할 때 燃料費의 合理化와 같이 直接的인 配分方法과 間接的인 配分方法에 의한 合理化가 있을 수 있다. 直接的인 配分方法으론 賃金費用을 都中經費項目으로 費用과 賃金算出過程에 算入·配分시키는 賃金制度로서 現在 널리 採用되고 있는 都中經費控除짓가림制의 方法이 있다. 지금 우리 나라나 主要 水產國家에서 가장 普遍的으로 採用되고 있는 짓가림制賃金形態에서 共同經費(日本에선 大仲經費, 美國에선 above-the-line expenses)란 項目으로 漁具代, 燃料費, 主副食費, 消耗品費, 容器代, 얼음代 그리고 修理費와 減價償却費, 販賣手數料,

26) 粗放的 費用管理란 生活活動의 活成策으로 費用支出의 經濟性을 考慮하지 않는 管理方式인데 例를 들면 漠然한 期待에서 動力化, 規模擴大 機械化에 費用을 支出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事務費 등의 諸經費에 이르기까지 總賣上高(the gross value of the vessel's catch)에서 控除되고 있다. 어떤 費用項目이 都中經費에 包含시켜야 할 것인가는 費用配分의 問題로서 合理化의 次元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나, 都中經費控除制 自體가 漁業勞動의 自主管理的 性格에서 派生된 合理的 費用管理方式인 것이다. 따라서 漁具費나 主副食費를 都中經費로 取扱함은 船員으로 하여금 費用節減에 努力케 하고 節減의 結果 一部는 個別賃金額 算出過程에서 賃金增額의 要因이 되기 때문에 가장 實利的인 合理的 經營合理化의 一方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表-3〉에서 漁具費와 主副食費의 費用構成比를 보면 1980~1981年間에 沿岸漁業은 18.9%에서 11.5%로 減少하고 近海漁業은 8.2%에서 9.4%로 增加하고 있으나, 金額으론 沿岸漁業이 103천원(7.6%), 近海漁業이 2,166천원(42.7%) 다 같이 增加하고 있다. 이와 같은 增減은 妥當性判定基準에 비추어 妥當性이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妥當性判定基準이 무엇인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費用增加는 物價上昇, 生産活動, 海況·漁況, 經營政策 등 複合的 要因에 의해 規定될 性質의 것이나 漁業收入의 增減率이 漁業生産活動, 物價, 漁業經營政策, 海況·漁況 등 諸要因의 總合指標로서 費用增減의 妥當性에 대한 測定尺度의 機能을 갖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러한 基準에 立脚하여 漁具費와 主副食費의 增減率을 比較하여 보면 沿岸漁業은 1980~1981年間 漁業收入의 114.4% 增加에 대하여 漁具費 2.6% 減少, 主副食費 17.1% 增加로 漁業收入의 增加를 훨씬 下廻하고 있는데 대하여, 近海漁業은 漁業收入의 22.0% 增加에, 漁具費 47.2%, 主副食費 34.8%의 增加로 漁業收入의 增加率보다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新規 漁具의 購入 등 漁具費의 上昇要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都中經費인 漁具費의 不合理化한 都中經費에의 算入은 避한다는 것이 勞使協調가 特히 強調되는 漁業經營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近海漁業에 있어선 費用配分의 合理性에 問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問題는 前述한 都中經費控除의 짓가림制에 있어서 直接的인 方法에 의한 費用의 節減效果는 賃金의 上昇에 直結된다는 面에서 勞使協調指向的임으로 그 實現可能性이 充分히 認識되는 反面에, 問題는 間接的인 方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間接的인 方法이 漁業作業能率의 增大를 費用의 減少없이 費用의 效用度를 높이는 方法이고, 效果 역시 間接的이기 때문에 直接的인 測定이 不可能하다는 難點이 있으며, 費用配分의 妥當性測定 如何가 또한 論議되어야 하는 데, 後述하는 費用配分問題로서 論議될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主要原價構成要素인 容器代를 보면, 近海漁業에 있어서, 〈表-3〉에서 보듯 主副食費와 비등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容器代를 都中經費로 取扱하는 경우가 있으나 容器는 船員의 漁撈活動과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都中經費가 船員의 直接的인 作業活動에 關聯이 있는 費用으로서 船員自身의 自己統制를 可能케 하는 費用이어야 한다는 本來의 性格과 乖離된다. 따라서 都中經費에의 容器代 導入은 不合理한 費用配分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容器代는 容器의 材質의 變更(例, 木箱子를 프라스틱箱子로)에 의한 直接的 節減方法이 合理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合理化의 方法이다.

지금까지 個個의 主要費用에 대하여 考察한 바 있으나 미크로的 配分分析의 最終段階로서 漁業經營에서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賃金制度인 짓가림制와의 關係에서 都中經費에 算入할 費用項目의 規定 問題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흔히 經營者的 費用管理의 便宜性에서 可能한 모든 費用

을 都中經費로 取扱하려는 傾向이 있으나[27] 前述한 바 都中經費는 船員賃金과 直結되는 性格을 갖는 것임으로 船員의 漁撈活動과 直接 關聯있는 것으로 流動費의 性格인 主副食費, 燃料費, 消耗品費 등은 都中經費項目으로 하되, 漁具費, 修理費, 容器代, 各種手數料 등 漁撈活動과 直接關聯이 없거나 혹은 固定資產에 歸屬된 性質의 費用은 經營者側의 單獨負擔費用으로 하는 費用配分政策이 確立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Drucker教授의 費用의 經濟的 配分이라는 것이 單純히 投入과 產出의 關係에서 費用에 接近하는 技術的 合理性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配分의 理論的 合理性과 池內教授가 生產性運動에서 理解하는 分配의 公平性을 內容으로 하는 費用配分이 要請된다. 그리고 미크로的 配分分析에 있어서 一律的인 判定基準을 設定하지 않고 事項에 따라 基準을 달리함은 特定費用의 投下効果는 他費用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으로 이를 費用的 狀況이라 定義할 때, 費用이 經營에 대해 가지는 狀況에 따라 效率이 規定되어야 하며 方法이 模索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四. 結　　論

漁業經營合理化의 指導原則을 企業의 指導原則인 營利性原理와, 營利性原理의 企業內在的·具體的 原理인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에서 求한 것은 漁業經營一般이 市場經濟와의 密接한 關聯에서만 存續할 수 있다는 現實的 理由에 그 根據를 求한 바 있다. 換言하면 欲求充足의 原理를 指導原理로 理解하는 漁家經營도 그 生產活動은 商品生產活動으로 營爲되어 왔고, 또한 漁家經營을 持續的으로 存續시키기 위해선 生產基盤인 漁船, 漁具등 基本的 生產手段의 現實的 維持·確保가 永續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可能케 하기 위해선 市場經濟原理인 營利性原理에 의한 繼續的인 經濟的 基盤 確保가 要求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經營合理化를 生產性運動으로 理解하고 그 指向方向으로 國民生活水準의 向上, 雇傭의 增大, 公平한 分配의 實現 등을 規定한 것이 池內教授의 見解였다. 여기에 이들 그 指向하는 바를 可能케 하는 經濟的 基盤의 形成을 可能케 하는 「生產性 向上」은 經營이란 次元에서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를 意味하며, 이것은 Drucker 教授가 附加價値에 의해 分析可能한 것으로 規定한 生產性槪念과 內容을 같이 하는 것으로 理解한 데 依據한 것이다.

經營合理化의 過程에서 總資本附加價値率의 極大化를 營利原則의 現代的·企業內在的 原理로 理解한 것은 合理化는 多樣한 意味內容을 가지고 끊임없이 變換되는 過程에서 恒常 새로운 過程을 確立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漁業經營의 發展過程을 遠洋漁業 즉 海外漁業에의 進出을 契機로 第一期와 第二期로 區分하고, 200海里時代 以後를 第三期로 한 바, 이는 Cole教授의 經營史的 段階區分에 따라 第一期를 「주먹九·九」式 合理化 段階, 第二期를 科學的 合理化 段階, 第三期를 水平的·垂直的 統合에 의한 合理化 段階라 規定한 바 있다. 이를 合理化를 위한 知識의 精緻度에 따라 第一期는 粗放的 合理化, 第二·三期는 集約的 合理化라 規定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第一期의 合

27) 水協中央會, 前揭報告, p. 69 參照.

理化가 漁船의 粗放的인 動力化, 規模化에 重點이 있었는데 比하여 第二·三期는 單純한 動力化나 規模化 段階에서 벗어나 各種의 海洋科學的 知識뿐 아니라 經營學的 知識의 利用에 의한 經營多角化·統合을 企圖하는 段階인데 緣由한다.

이러한 諸 合理化 段階에서 第三期의 沿·近海漁業을 中心으로, 費用의 經濟的 配分에 의해 生産性이 規定되는 것으로 보는 Drucker教授의 所論에 準據하면서 매크로的 그리고 미크로的 費用配分分析을 企圖한 바 매크로的 配分分析은 損益分岐點分析의 技法을 利用한데 대하여 미크로的 配分分析은 個別費用의 利用合理性을 費用의 特性에 따라 個別的인 判定規準에 의거 論議되어야 한 것이나, 特히 모든 費用을 都中經費化하려는 傾向은 船員의 漁撈活動에 直接 關聯性있는 流動性費用을 除外한 모든 費用을 經營側이 負擔하는 費用으로 轉換시킴이 合理的 費用配分일 것이며, 費用配分에 따른 附加價値率의 極大化가 實現될 때 漁業經營의 合理化는 合理化로서의 正當性을 認識하기에 이를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the Principle of Rationalization in Fisheries Management

Ryong-Sik Khong

This study has examined the principle of rationalization as a guiding principle in fisheries management. Generally speaking, the guiding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is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which is oriented to the profit maximization, but it has been insisted by Dr. Mohri that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should be translated into the maximization of ratio of added value on gross capital. According to Dr. Durcker, added value (contributed value) can be used to analyze productivity only if the allocation of costs which together make up the figures is economically meaningful. Therefore, the rationalization of fisheries management can be measured as a result of economic allocation of costs.

The analysis of economic allocation of costs divides into macro-allocation of costs and micro-allocation of costs. In fisheries menagement, the former makes use of the analysis of break-even point, and the latt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individual cost respectively and the state of division of costs which allocate into above-the-line expenses of lay system and management's burden expenses.

In macro-allocation of costs, it is advisable that fixed costs be converted into variable costs. This is characteristically possible in fisheries management, because wages belong to variable costs in fisheries management while they are regarde as fixed cost in the other industires.

Because we could find that all costs would belong to above-the-line expenses, in micro-allocation analysis, the very cost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fisherman's poduction activity should be classified into above-the-line expenses, and the other costs into management's burden expenses. This is a central problem in the rationalization of fisheries management.